예 산 총 칙

2020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96,236,032	17,887,081
일반회계	533,540,353	16,006,211
특별회계	62,695,679	1,880,870
공기업특별회계	34,254,832	1,027,645
상·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	34,254,832	1,027,645
기타특별회계	28,440,847	853,225
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	17,375,493	521,265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6,472,398	194,172
농공지구조성사업	2,364,845	70,945
의료급여기금운영	1,520,609	45,618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	707,502	21,225

제 2 조 세입 ·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 · 세출 예산 명세" 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3,018,887천원, 재해 · 재난목적예비비는 3,691,133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7,887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